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29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김윤덕·정동영·박홍배

박희승 • 윤준병 • 위성곤

이원택 • 이연희 • 강선우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 본계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 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법률 제 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 수립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구역"을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국가유산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인 경 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 장이"로,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 을 확정할 때"를 "승인할 때"로, "승인 또는 확정한 때"를 "승인한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하는 사 항
-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하는 사 항
-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제21조제1항 중 "시·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를 "변경승인을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가"를 "국가유산청장이"로, "승인·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을 "승인·변경승인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 정 등) ① ~ ⑥ (생 략) 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 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제49조에 따른 지 구단위계획 수립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2.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 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지정 ⑦ (생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17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정비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고 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1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구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5.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생 략)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12. (생 략) <신 설>

- 13. (생략)
- ③ ~ ⑦ (생 략)
-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 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 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 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_	 	 	 			 	
_	 	 	 			 	
_	 	 	 				
				•	•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1. ~ 12. (현행과 같음)
 - 13. 정비구역 내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
 -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u>유산청장-----</u>

-. -----<u>제18조제1항제3</u> 호또는 제4호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7. (생략)
-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신 설>

1. ~ 7.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이
- <u>승인할 때</u>
<u>승인한 때</u>

-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승인을 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 는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또 는 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 른 허가(같은 법 제74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③ (생 략)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다)를 요하는 사항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 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요하는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에	따
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	

는 어가들 요야는 사항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u>국가유산청장이</u>
변경승
<u>인을 할 때</u>

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② <u>국가유산청장이</u>
- <u>승인·변경승인하는</u>
③ 국가유산청장
④·⑤ (현행과 같음)